

예 산 총 칙

201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7,337,582	13,420,127
일반회계		330,493,000	9,914,790
특별회계		116,844,582	3,505,337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16,844,582	3,505,337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55,600	37,668
	주차장특별회계	95,000	2,85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156,969	64,709
	주택사업특별회계	95,688	2,87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7,701,501	2,931,045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8,559	4,757
	치수사업특별회계	880,265	26,40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500,000	15,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0	30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	14,000,000	420,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02,64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